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실무 등을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안 제60조, 제62조, 제110조)
- 압수·수색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안 제60조제5항 신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 추가(안 제10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4.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

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 경우
2. 법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제6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압수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 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일, 참여장소, 참여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4조의7 제목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전자정보매체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를 “정보저장매체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컴퓨터디스크 등”을 각각 “정보저장매체등”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가 있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u>  <u>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u>  <u>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u>  <u>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u>  <u>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u>  <u>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u>  <u>②</u> <u>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u>  <u>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u>  <u>수 있다.</u></p>
<p>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 ·                  ② (생략)</p> <p>&lt;신 설&gt;</p>	<p>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원은 법 제122조 단서에</u>  <u>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u>  <u>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u>  <u>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u>  <u>(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u>  <u>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u>  <u>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u>  <u>를 부여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④ <u>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u>  <u>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u>  <u>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u>  <u>수 있다.</u></p>
<p>&lt;신 설&gt;</p>	<p>⑤ <u>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u></p>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7조(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압수, 수색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 경우
2. 법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제6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

제107조(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  
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3. ~ 7. (생략)

② (생략)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생략)

<신설>

<신설>

----- 각호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압수대  
상이 전자정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  
저장매체등

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  
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의자, 변호  
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

<신 설>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정한 등본을 낼 수 있다.

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일, 참여장소, 참여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4조의7(전자정보매체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정보저장매체등-----  
-----  
-----  
-----  
-----  
-----  
-----  
-----  
-----  
-----

②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정보저장매체등-----  
-----  
-----  
----- 정보저장매체등-----  
-----  
-----  
-----.

③ 정보저장매체등-----  
-----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579